

# 냉동공조설비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정부(환경부)는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 법에 냉매 관리 내용을 추가하고,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를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내 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 서론

정부는 2012년 5월, 국내외적으로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 및 지구온난화 물질로 규정된 냉매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냉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기존에 있던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추가하였으며, 제반 절차를 거쳐이 내용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에 사용되는 냉매와 현황및 이 법령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1〉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생산 및 수출입 현황

| (= 17 T T T T O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        |        |        |  |  |  |
|-----------------|---|--------|--------|--------|--------|--------|--|--|--|
| 구분              | '07                                       | '08    | '09    | '10    | '11    | `12    |  |  |  |
| 생산(억원)          | 90,783                                    | 69,160 | 57,720 | 62,327 | 87,206 | 91,560 |  |  |  |
| 내수(억원)          | 51,490                                    | 52,732 | 41,273 | 53,143 | 49,699 | 52,180 |  |  |  |
| 수출(백만\$)        | 3,660                                     | 3,841  | 3,226  | 4,647  | 5,067  | 5,411  |  |  |  |
| 수입(백만\$)        | 1,283                                     | 1,313  | 821    | 1,258  | 1,018  | 1,487  |  |  |  |
| 무역수지(백만\$)      | 2,377                                     | 2,528  | 2,405  | 3,389  | 4,049  | 3,924  |  |  |  |

비고. 1. 생산 및 내수자료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자료 2. 수출 · 수입실적, 관세청 무역통계 자료

**권 혁 중**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khi@ref.or.kr

## 〈표 2〉 시스템에어컨 설치 현황(실외기 기준)

(단위 : 대)

| 연도별<br>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
| EHP       | ?     | 28,615 | 38,093 | 47,249 | 70,085 | 93,426 | 90,661 | 74,739 | 85,140 | 75,423 | 64,703 | 668,134 |
| GHP       | 3,274 | 4,705  | 5,994  | 5,798  | 3,944  | 3,680  | 1,862  | 1,171  | 1,157  | 1,368  | 2,875  | 35,865  |
| 계         | 3,274 | 33,320 | 44,087 | 53,047 | 74,029 | 97,106 | 92,523 | 75,910 | 86,297 | 76,791 | 67,578 | 703,999 |

비고) 1. 위 수량은 법정냉동톤 3 RT 이상의 것이며, 3 RT 미만은 포함되지 않음

- 2.3RT 미만 제품은 보급량 전체의 5% 이내일 것으로 판단
- 3. 위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2003년도 이전 물량은 약 3만대로 추정
- 4. 실내기는 실외기 1기 당 4.5대로 약 350만대 추정

# 우리나라 냉동공조산업 현황(표 1~2)

연간 냉매 시용량(추정치): 23,000톤 o 자동차용: 4.000톤(R134a)

냉동공조산업에서의 냉매사용 현황(표 3~7)

o 가정용, 상업용: 7,000톤(R410a, R600)

o 산업용: 3,000톤(R22, R123, R134, NH<sub>3</sub>)

## 〈표 3〉 사용 냉매 종류별 분류

| 분야 냉매   | CFC | HCFC          | HFC              | 자연냉매                                   | 비고 |
|---------|-----|---------------|------------------|--|----|
| 가전      | _   | _             | O (R134a)        | O(HC, 냉장고)                             |    |
| 자동차     | _   | _             | O (R134a)        | -                                      |    |
| 시스템A/C  | _   | O (R22)       | O (R407c, R410a) | _                                      |    |
| 건물 · 산업 | 0   | O (R22, R123) | O (R134a)        | O (NH <sub>3</sub> , CO <sub>2</sub> ) |    |

## 〈표 4〉 냉동냉장기기 구분 및 제품별 사용 냉매

|          | 제품 분류         |                    | 사용냉매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del>\\\\\\\\\\\\\\\\\\\\\\\\\\\\\\\\\\\</del> |  |
|          |               | (a) 창문형 룸에어컨       | (R22), R410A, R407C                               |  |
|          | (1) 콘웨이코      | (b) 분리형 룸에어컨       |   |  |
|          | (1) 룸에어컨      | (c) 룸에어컨(냉,난방 겸용)  |   |  |
| 가전       |               | (d) 멀티에어컨          |   |  |
|          |               | (a) 냉방전용 5HP 미만    |   |  |
|          | (2) 패케이지에어컨   | (b) 냉방전용 5HP 이상    |   |  |
|          |               | (c) 패케이지형Heat Pump |   |  |
|          |               | (a) EHP            | (R22), R410A, R407C                               |  |
|          | (3) 시스템에어컨    | (b) GHP            | *(3)-(c)지열히트펌프는                                   |  |
|          |               | (c) 지열히트펌프         | R134a도 적용   |  |
| 100 1100 | (4) 항온항습기     | HCFC→HFC 대체과정      | 대부분 HCFC 사용                                       |  |
| 상업 · 산업용 | (5) 업소용 냉동냉장고 |                    |   |  |
|          | (6) 제습기       |                    | (R22), R410A                                      |  |
|          | (기) 하거 나하자된   | (a) 항온항습조          | (R22)   |  |
|          | (7) 환경시험장치    | (c) 초저온조           | R23   |  |

# (표 4) 냉동냉장기기 구분 및 제품별 사용 냉매

|          | 제품 분류              |                          | 사용냉매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 00°                     |  |
|          | (8) 동결진공건조장치       |                          | 404A                      |  |
|          | (9) 콘덴싱유닛          | (a) 콘덴싱유닛(10HP 미만)       | R22, R134a, R410a, R407C, |  |
| 사이 . 사이유 | (9) 근한경규것          | (b) 콘덴싱유닛(10HP이상)        | R404a                     |  |
| 상업 · 산업용 |                    | (a) 왕 <del>복동</del> 식냉동기 | R22, R407c                |  |
|          | (10) 냉동 및 공조용 설비기기 | (b) 터보냉동기                | (R123), R134a, R245fa     |  |
|          |                    | (c) 스크류냉동기               | R22, R407C, R134a         |  |
|          |                    | (a) 승용차용 에어컨             |                           |  |
|          |                    | (b) 트럭용 에어컨              |                           |  |
| 차량용      | (11) 수송기계용 에어컨     | (c) 버스용(대형버스용)           | R134a                     |  |
|          |                    | (d) 열차용에어컨               |                           |  |
|          |                    | (e) 버스에어컨(소형 및 승합)       |                           |  |

### 〈표5〉 냉동냉장기기 설치 및 가동 수량

| 설치      | 연도    | 1990~1994 | 1995~1999 | 2000~2004 | 2005~2009 | 2010~2012 | 계         |
|---------|-------|-----------|-----------|-----------|-----------|-----------|-----------|
| 터보닝     | 생동기   | 1,002     | 1,814     | 1,134     | 1,292     | 1,151     | 6,393     |
| 스크류     | ·냉동기  | (4,000)   | (4,000)   | 4,397     | 4,107     | 2,992     | 19,496    |
| 왕복동/    | 식냉동기  | 5,349     | 4,283     | 2,764     | 1,138     | 444       | 13,978    |
| 시스템 에어컨 | EHP   | _         | _         | 39,508    | 342,528   | 235,302   | 617,338   |
| 시드림에이신  | GHP   | _         | _         | (1,000)   | 20,882    | 3,637     | 25,519    |
| 콘덴싱     | 님 유닛  | 81,065    | 161,057   | 37,606    | 34,391    | 5,638     | 319,757   |
| 항온형     | 항습기   | 6,811     | 10,488    | 15,972    | 22,863    | 9,956     | 66,090    |
| 7       | 계     | (98,227)  | (181,641) | 102,381   | 427,201   | 259,120   | 1,068,571 |
| 가동      | 율(%)  | 80%       | 90%       | 100%      | 100%      | 100%      | _         |
| 가동수     | -량(대) | 78,582    | 163,478   | 102,381   | 427,201   | 259,120   | 1,030,761 |

### 비고 1.() 내의 숫자는 추정치임

- 2. 가동수량은 가동율을 감안한 수량이며 가동율은 협회 검사 자료를 검토하여 추정한 수량임
- 3. 산업용냉동기 중에는 위 분류내용 외, 업무용 냉장고, 생맥주 서버, 얼음 제조기, 자동판매기, 건물용 냉수기 등이 있음
- 4. 상업용냉장 · 냉동 쇼케이스, 저온냉동창고, 농산물 저장창고 등은 콘덴싱 유닛에 포함됨
- 5. 1989년 이전 설치된 냉동기가 사용 중인 경우도 있으나, 극히 적은 수량이며 중간개조 등에 따라 그 이후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표 6〉 냉동냉장기별 냉매 충진량

| 구       | 분    | 1985~2009 설치수량 | 가동중인기기수①          | 대당 냉매보존량(kg) | 평균충진량(kg)② | 기기별 냉매 보유랑<br>(kg)③ |
|---------|------|----------------|-------------------|--------------|------------|---------------------|
| 터보닝     | 생동기  | 6,393          | 6,011             | 800~4,400    | 1,500      | 9,016,500           |
| 스크류     | ·냉동기 | 19,496         | 18,296            | 20~150       | 70         | 1,280,720           |
| 왕복동     | 식냉동기 | 13,978         | 12,480            | 10~150       | 60         | 748,800             |
| 시스템 에어컨 | EHP  | 617,338        | 617,338           | 15~25        | 20         | 12,346,760          |
| 시스템에어진  | GHP  | 25,519         | 25,519            | 20~30        | 25         | 637,975             |
| 콘덴성     | 님 유닛 | 319,757        | 287,438           | 10~150       | 70         | 20,120,660          |
| 항온항습기   |      | 66,090         | 90 63,679 3~21 15 |              | 955,185    |                     |
| 7       | 계    | 1,068,571      | 1,030,761         |              |            | 45,106,600          |

비고. 기기별 냉매 보유랑(kg)③=가동 중인 기기수①  $\times$  평균충진량(kg)②

| 〈표 7〉 냉동낭             | 장기기별 냉 | H(CFCs HC | FCs 및 HFC | `s) 보충량      |
|-----------------------|--------|-----------|-----------|--------------|
| \ <del>#</del> // @@c | 0///20 |           |           | <b>少一つ</b> の |

| 그느                | 구분 냉매보유랑(kg) |               | 냉매교체율(%)②     | 연간보충량(kg)③ | ODS 비율(%)④      | 냉매별 교체량(kg)  |           |
|-------------------|--------------|---------------|---------------|------------|-----------------|--------------|-----------|
| 12                | •            | 64  ±π6(kg/U) | 8-11-X12(70)@ | 111466(kg) | OD3 412 (70)(4) | CFCs, HCFCs⑤ | HFCs6     |
| 터보냉               | 동기           | 9,016,500     | 43            | 1,893,465  | 50              | 946,732      | 946,733   |
| 스크류닝              | 뱅동기          | 1,280,720     | 30            | 550,710    | 90              | 495,639      | 55,071    |
| 왕 <del>복동</del> 식 | 냉동기          | 748,800       | 3             | 224,640    | 95              | 213,408      | 11,232    |
| 시스템 에어컨           | EHP          | 12,346,760    | 5             | 370,403    | 25              | 92,600       | 277,803   |
| 시드림에이신            | GHP          | 637,975       | 15            | 31,899     | 30              | 9,570        | 22,329    |
| 콘덴싱               | 유닛           | 20,120,660    | 15            | 3,018,099  | 90              | 2,716,289    | 301,810   |
| 항온항:              | 습기           | 955,185       |               | 143,278    | 95              | 136,114      | 7,164     |
| 계                 |              | 45,106,600    |               | 6,232,493  |                 | 4,610,352    | 1,622,141 |

비고. 1. 연간보충량(kg)③= 냉매보유랑① × 냉매 교체율② 2. 냉매별 교체량(kg)⑤ = 연간보충량(kg)③ × ODS비율④

o 기타(유지보수): 9.000톤(R22, R123, 재고 또는 중고 CFCs가 유통되고 있음 R134, NH<sub>3</sub>)

# 냉매 공급 · 소비 현황

# 냉매 소비량

- 2012년 냉매로 사용되는 프레온류(CFCs. HCFCs 및 HFCs)는 연간 약 23,000톤 수준으로 추정
- HFCs 사용량은 1만 톤(HFC-134a, 410a 등) 이상으로 추정
- CFCs, HCFCs 사용량은 1.3만 톤(HCFC-22. 123 등) 이상으로 추정
- \* CFCs(CFC-11. 12 등)는 신규 생산 및 수입 되지는 않으나 현재까지 사용 중인 기기가 있어

# ODS물질(CFCs, HCFCs) 소비량

- o ODS물질(CFCs, HCFCs) 중 소비되는 물질 대부분은 R-123 및 R-22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
- 국내 설치되는 대부분의 컨덴싱유닛, 항온 항습기는 HCFCs(R-22) 사용
- 신규 장비에 사용하는 냉매는 약 5.000톤 (항온항습기, 컨덴싱유닛, 일부 터보냉동기 외) 이상, 유지보수용으로 약 7,000톤 이상 사용 추정
- OHCFCs 물질 쿼터제에 따른 가격. 수급동향 의 변수 유의 필요

## HFC 소비 및 공급

### 〈표8〉국내 HFC 연간 소비량

| /FIO | I. =\ |
|------|-------|
| (トナチ | [논)   |

|           | 구분     |       | 2011   | 2012   | 2013   |
|-----------|--------|-------|--------|--------|--------|
|           |        | 자동차   | 3,200  | 3,200  | 3,200  |
|           | D 101  | 냉장고   | 300    | 300    | 300    |
|           | R-134a | 터보냉동기 | 2,900  | 3,100  | 3,200  |
| HFC<br>종류 |        | 소계    | 6,400  | 6,600  | 6,700  |
| σπ        |        | 에어컨등  | 3,100  | 2,500  | 2,600  |
|           | R-410a | A/S용  | 800    | 1,200  | 1,500  |
|           |        | 소계    | 3,900  | 3,700  | 4,100  |
| R-410a    |        |       | 10,300 | 10,300 | 10,800 |

(출처)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표9〉HFC 수입 및 판매가격

| 구분       | 20         | 10        | 20         | 11        | 2012       |           |
|----------|------------|-----------|------------|-----------|------------|-----------|
| 一        | 수입가(\$/kg) | 판매가(원/kg) | 수입가(\$/kg) | 판매가(원/kg) | 수입가(\$/kg) | 판매가(원/kg) |
| HFC-134a | 5.55       | 7,500     | 8.25       | 10,000    | 4.78       | 6,100     |
| HFC-152a | 2.44       | 4,900     | 3.55       | 8,500     | 3.17       | 6,700     |
| HFC-410a | 5.85       | 8,700     | 9.65       | 14,000    | 4.62       | 6,500     |
| HFC-32   | 3.35       | 5,800     | 4.30       | 6,300     | 2.40       | 4,200     |
| HFC-125  | 9.48       | 15,000    | 10.82      | 16,000    | 4.09       | 8,200     |
| HFC-404a | 8.94       | 11,500    | 12.00      | 17,100    | 6.30       | 9,800     |
| HFC-407c | 8.50       | 11,100    | 10.00      | 16,000    | 6.00       | 9,700     |

(출처) 관세청 무역통계 및 수입업체 자료

○ 2012년도의 HFC 사용량은 약 1만 톤 (HFC-134a, 410a 등)으로 가정용 냉장고, 산업용 냉동기 및 에어컨 등의 냉매로 사용됨(**표8**)

○HFC는 전량 수입되며, HFC-134a, 410a의 수입가격은 2013년 기준 4.7 \$/kg로 전년대비 하 락 추세(**표9**)

# HFC 사용 제품

o(자동차 에어컨) 2002년부터 냉매로 대 체물질 HFC-134a가 사용, 2011년 기준 제조용

(2,786톤) 및 보충용(414톤)으로 약 3,200톤 사용(**표 10**)

○ (가정용 냉장고) 프레온 가스 대신 HFC-134a가 사용, 2009년 기준 제조용(235톤) 및 보 충용(45톤)으로 약 280톤 사용(2011~2013년도 유사)(**표 11**)

○(터보냉동기 및 히트펌프 등) 터보냉동기 는 HCFC에서 HFC- 134a로 전환하여 보충용 포 함 2012년 기준 약 3,100톤, 히트펌프 등(시스템 에어컨 및 가정용에어컨 등)은 HFC-410a로 전

〈표 10〉 2011년 자동차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 구분  | 생산 대수(A) | 충진량(대당)(B) | 사용량(AXB) | 보충용  | 총사용량   |
|-----|----------|------------|----------|------|--------|
| 경소형 | 1,851천대  | 400 g      | 740톤     |      |        |
| 중형  | 1,949천 대 | 500 g      | 974톤     |      |        |
| 대형  | 1,072천 대 | 1,000 g    | 1,072톤   |      |        |
| 합계  | 4,872천 대 |            | 2,786톤   | 414톤 | 3,200톤 |

(출처)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표 11〉 2009년 가정용 냉장고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 구분 | 냉장고*                | 충진량(대당)(B) | 사용량(AXB) | 보충용 | 총사용량 |
|----|---------------------|------------|----------|-----|------|
| 합계 | 합계 940천 대 290 g(평균) |            | 273톤     | 7톤  | 280톤 |

<sup>\*</sup> 양문형 냉장고(680 리터 이상), (출처: 한국에이치백산업협회)

### 〈표 12〉 2012년 냉동기, 히트펌프 생산 대수 및 냉매 사용량

| 구분        | 설치대수(A)  | 냉매 충진량(B) | 사용량(AXB) | 보충용    | 총사용량   |
|-----------|----------|-----------|----------|--------|--------|
| 터보냉동기     | 2,033대   | 1,300 kg  | 2,600톤   | 500톤   | 3,100톤 |
| 시스템에어컨 등* | 123,500대 | 20~25 kg  | 2,500톤   | 1,200톤 | 3,700톤 |

<sup>\*</sup>시스템에어컨 등 = 전기식히트펌프(EHP) + 가스식히트펌프(GHP) + 가정용에어컨

환하여 보충용 포함 2012년 기준 약 3,700톤 사용 상업 및 산업용 한 것으로 추정(**표 12**)

\* 1차 규제물질 CFC(프레온가스)의 중간 대 체물질로 2013년부터 감축규제 시작

# 냉매 관리 현황

# 자동차 및 가전

o자동차

- 일정 규모 이상의 폐차장에 냉매회수 장치설치
- 냉매를 회수하고자 하는 자가 회수기를 설 치하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있음
- 실질적으로 냉매의 회수를 보장하지 못하 정보는 없음 며.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o가전(냉장고, 에어컨)
- 전국 5개 재활용센터(한국전자산업환경협 회)에서 냉매 회수
- 실질적 회수가 어려우며, 회수 냉매에 대한 통계. 사후관리 파악 어려움

o시스템에어컨

- EHP, GHP는 보급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폐기되는 분량은 적음
- 보수 시 회수냉매의 처리는 알 수 없으나 회 수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o산업용(터보냉동기, 스크류냉동기 및 왕복 동냉동기와 컨덴싱 유닛을 사용하는 제조업, 냉 동창고 등)
- 유지보수의 약 90%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 로 추정
- 유지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의 관리에 대한
- 대부분 대기 중 방출 또는 일부 재활용을 위 하여 비축하는 것으로 판단

# 냉매 관리 및 규제 배경

# 냉매는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물질(표 13)

〈표 13〉 주요 냉매의 오존층파괴지수 및 지구온난화지수

| 계열    | 냉매명             | 오존층 파괴지수 | 온난화 지수 | 비고   |
|-------|-----------------|----------|--------|------|
| CFCs  | CFC11           | 1        | 4,750  |      |
| HCFCs | HCFC22          | 0.055    | 1,810  |      |
| HCFCS | HCFC123         | 0.02     | 77     |      |
|       | HFC407C         | 0        | 1,770  |      |
| HFCs  | HFC410A         | 0        | 2,090  |      |
| HFCS  | HFC134A         | 0        | 1,430  |      |
|       | R32             | 0        | 675    |      |
| HFOs  | HFO1234yf       | 0        | 4      |      |
|       | CO <sub>2</sub> | 0        | 1      |      |
| 자연냉매  | NH <sub>3</sub> | 0        | 0      | 암모니아 |
|       | R290            | 0        | 3      | 프로판  |

### 〈표 14〉 국제 협약에 의한 냉매 규제 일정

| l liell = | 그제 취하면 | ¥0.40                 | 그게 이저/게바느 나그 기조)        |
|-----------|--------|-----------------------|-------------------------|
| 냉매류       | 규제 협약명 | 주요사유                  | 규제 일정(개발도상국 기준)         |
| CFCs      | 몬트리올협약 | 오 <del>존층</del> 파괴 물질 | 2010년부터 전폐(생산, 수입 금지)   |
| HCFCs     | "      | "                     | 2013년부터 규제 시작, 2030년 전폐 |
| HFCs      | 교토협약   | 지구온난화 물질              | 규제 논의시작, 2018년부터 규제 개시? |

# 냉매 규제 사유와 일정(표 14)

이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CFCs, HCFCs, HFCs 등의 냉매를 오존층파괴물질 및 지구온난화 물질 로 규정하고 생산, 관리, 폐기를 엄격하게 할 것을 진행

o우리나라도 국제 규제에 맞추어 냉매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추진 중

- 우리나라는 G20 에너지 실무그룹 에너지 효율성 · 녹색성장 부문 공동조정국으로서 해당 부문 논의를 진전시킬 의무
-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온실가 스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설정
- HFCs는 감축대상 온실가스 중 하나로, 정 부 정책 기조에 부합

# 냉매 관련 법규(표 15)

##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o2012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9조3 신설 o2013년 5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마련

o2013년 10월 11일,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고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 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 · 보전하 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표 15〉 냉매 관련 법규

| 관련 법률                                   | 규제 목표  | 주요 관련 법률 내용   |
|---|--|---|
| 대기환경보전법<br>(환경부)                        | 기후 생태계 변화유발물질 관리에 의해<br>불소계가스 관리   | · '기후·생태계변화유발물질'의 정의<br>· 공기조화기 냉매관리·회수·처리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br>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부) | 오존층 파괴물질(불소계가스 포함)의<br>생산ㆍ소비ㆍ수입ㆍ수출의 양적 통제<br>및 관리  |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 합리화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과 특정물질 제조 수입 부담금   |
| 폐기물관리법<br>(환경부)                         | 폐가전 제품의 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물<br>질의 회수ㆍ보관ㆍ 재활용 규제   | · 폐가전제품의 처리기준 · 방법, 재활용 방법<br>· 대기오염물질 등 함유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  |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br>에 관한 법률(환경부)   | 냉장고의 염회불화탄소 등 냉매물질의<br>회수, 자동차 폐차시의 기후생태계 변<br>화유발물질의 분리 · 보관                                | · 전기 ·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의 사용제한<br>· 폐전기 · 폐전자제품과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  |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와 유해<br>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   | ·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유해성 평가<br>·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 · 금지물질 등의 지정<br>· 지정물질 관련 영업의 등록, 허가 및 관리<br>· 물질관련 정보제공  |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br>(산업부)                     |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br>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br>기·특정설비등의 조와 검사등에 관<br>한사항을 정함고압가스로 인한위해<br>(危害)를 방지 | 고압가스의 제조하가, 수입신고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고압가스 공급자(고압가스제조, 판매자 등)의 의무 용기등의 표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가스사고조사위원회,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안전관리부담금 |

제9조의3(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① 환경부 장관은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 질 중 공기조화기 냉매의 배출을 줄이고 회수· 처리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②냉매를 사용하는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 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히 관리하고 회 수·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공기 조화기의 규모, 건물 및 시설 기준, 냉매의 관리 · 회수 · 처리 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 조신설 2012.5.23]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14조의4(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규모 및 건물 · 시설 기준)

①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공기 조화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 화기로서 수소염화불화탄소 등 냉매를 모두 합산 한 충전용량이 50 kg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법 제9조의3 제3항에 따른 관리대상 건물·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 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 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2. 시설: 제1호의 건물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점포, 나. 창고, 다. 그 밖에 사업장으로 이용되는 시설

③제1항에 따른 충전용량의 산정방법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정한 충전용량, 배관의 길

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5.24]

제14조의5(냉매의 관리 · 회수 · 처리 방법 등)

①제14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한다)는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냉매를 회수 · 보관 · 충전 · 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유자 등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가동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기 조화기의 상태, 냉매 누출 여부 등을 1년마다 점 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기조화기를 유지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③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냉매를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기기를 갖추어 직접 회수하거나 관련 전문기기를 갖추고 냉매의 회수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하여 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

- 1. 공기조화기를 폐기하려는 경우
- 2. 공기조화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 부 품, 그 밖에 다른 제품 일부로 이용할 것을 목적으 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하려는 경우
- 3. 공기조화기를 유지 · 보수하거나 이전 설치 하려는 경우

④소유자 등은 제3항에 따라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 7의 2의 냉매회수기준을 따라야 한다.

⑤소유자 등은 제3항에 따라 회수(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냉매 를 폐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폐가스류 처리업 등록을 한 자

-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3.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 허가를 받은 자
- ⑥소유자 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 1호서식의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⑦소유자 등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6항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조화기의 가동을 종료하게 된 때에는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에 해당하는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기조화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2. 냉매회수를 위한 관련 전문기기의 매매계 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 3. 냉매회수 위탁계약서 사본
  - 4. 냉매폐기 위탁계약서 사본
  - 5. 냉매 매매계약서 사본
- ⑧소유자 등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냉매관 리기록부를 작성 · 보관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 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 · 보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24]

#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3 - 127호)

제2조(정의)

- 1. "공기조화기" 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 란「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 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다만,「고압 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의 기준 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 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
- 3. "소유자 등" 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4 제2항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하며 이하 "건물 및 시설" 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4. "충전용량" 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 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역화불화탄소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

o 제3조제1항제4호: 1일 냉동능력 20톤이상(가연성, 독성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u>냉동ㆍ냉장용인</u>경우50톤이상, 건축물 냉난방용은 100톤이상

o 제4조제2호: 냉동능력 3톤이상 20톤 미만(가연성, 독성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u>냉동ㆍ냉장용인</u>경우 20톤 이상. 건축물 냉난방용은 20톤 이상 100톤 미만)

# 대상 건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

o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고 가(高梁)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 - 127호)

(C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수소불화탄 상이 되는 액화가스)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소(HFCs)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가습. 정화) 장치

# 대상품

\* 대상품은 CFCs, HCFCs, HFCs를 50 kg 이 상 보유하는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의 건축물 용 고압(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 메가파스칼 이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방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3항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 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기조화기"란 냉매를 사용하여 공기 조화(냉방, 난방, 제습, 가습, 정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우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 2.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세3조제1항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기조화기를 말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의 기준에 따라 냉동능력 합산 대상인 시설은 냉매 충전용량을 산정할 때에 하 나의 공기조화기로 본다.
- 3. "소유자 등"이란 관리대상 공기조화기를 가동하는 건물 및 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건물 및 시설 을 말하며 이하 "건물 및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 4. "충전용량"이란 공기조화기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필요한 냉매량으로서 염화불화탄소, 수소염화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의 질량을 합한 것을 말한다.

제3조(냉매관리 방법) 관리대상 공기조화기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냉매를 적정 관리하여야 한다.

- 1. 냉매누출 최소화
- 2. 공기조화기 냉매 충전용량의 산정
- 3. 공기조화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경우 냉매회수기준의 준수
- 4. 연 1회 냉매 누출여부의 점검 및 유지 · 보수
- 5. 냉매의 보관 · 인도 시 밀폐용기의 사용
- 6. 냉매 폐기 시 위탁처리
- 7.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냉매관리기록부 작성ㆍ제출

제4조(충전용량의 산정) ① 충전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공하지 않은 배 관 등에 충전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한다.

-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가 제원으로서 제공한 냉매 충전용량
- 2. 공기조화기의 정상 가동을 위해 주입한 냉매의 양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냉매 충전용량은 해당 공기조화기의 제작사양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 2. 공기조화기 제작사가 제원으로써 제공한 충전용량 이외에 배관 등 추가된 설비로 인해 주입된 냉매량은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 하다.
-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냉매량은 추가된 설비의 제작사 및 설치자가 제공한 해당 설비의 냉매 충전용량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 1. 냉매량 =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내부 단면적 imes 액상 냉매가 충진된 배관의 길이 imes 배관에 충진된 액상 냉매 밀도
- ④소유자 등은 해당 제작사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충전용량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냉매 충전용량 산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충전용량의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당 공 기조화기의 충전용량 산정결과를 알려 주어야한다.

- ⑥ 환경부 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충전용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 등은 전문기관에게 적극 현조하여야 한다.
- 1. 해당 공기조화기의 설치현황
- 2. 해당 공기조화기에 충전된 냉매의 회수 등

제5조(누출관리) ① 소유자 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의 회수·보관·충전·인도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소유자 등은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직접 회수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냉매를 최대한 회수하고 회수 과정에서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2의 냉매회수기준(이하 "냉매회수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의 냉매 회수를 직접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려는 소유자 등은 회수 시에 냉매 회수 관련 전문기기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기기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냉매 회수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소유자 등은 위탁 받은 자로 하여금 회수 과정에서 냉매의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냉매의 회수를 실시한 소유자 등은 냉매회수 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 제6항에 따른 냉매관리기록부(이하 "냉매관리기록부"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⑥소유자 등은 제1항의 내용과 같이 공기조화기에 충전되어 있는 냉매를 보관·인도하는 경우 냉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기능을 갖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누출점검) ① 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 여부를 점검할 때에 배관 등을 포함한 공기조화기 전체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실시 결과를 냉매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공기조화기의 냉매 누출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인 파악 및 보수를 실시하여 냉매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냉매의 폐기) ① 소유자 등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 제3항에 따라 회수한 냉매를 폐기하려는 경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는 위탁 받은 자에게 냉매의 폐기과정에서의 냉매 누출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냉매관리기록부의 제출) ① 소유자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 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냉매의 관리·회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②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냉매관리기록부의 사본을 매년 1월 31일까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4조의5 제7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냉매관리기록부를 제출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제공한 냉매관리정보체계에 해당정보를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홍보·협력 및 지원) ①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에 대하여 공기조화기 냉매의 적정한 관리에 관하여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 장관은 사업자 및 국민이 공기조화기 냉매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냉매 관리를 위한 기관별 역할) ① 환경부 장관은 공기조화기 냉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공기조화기 냉매 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구축
-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1. 소유자 등의 냉매 관리지침 적정 이행 지원 등
- 2. 제9조 제2항에 따른 냉매관리정보체계의 운영
- 3. 제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사 및 충전용량 산정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집중기획

# **퇴(종**[]

# 결론

정부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대상품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공기조화기로 한정되어, 많은 양의 냉매를 사용하는 산업용 및 저온창고 등이 제외되어 있다. 환경부 단독의 법령으로 시행하고, 사용 중인 공기조화기의 냉매 관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냉매관리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2001년 6월22일 법률 제64호로 제정되고 2006년 6월8일 개정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정제품에 관한 프레온 냉매류 회수 및 파괴 실시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 산업성과 환경성 공동 법률로 제정, 운용되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그 내용도 제조과정(재료

합성 및 제품조합)에서 CFC, HCFC, HFC의 대체화 연구개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도 함부로 방출해서는 안 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사용과정에서는 CFC, HCFC, HFC의 수리 및 정비시회수의무와 동시에 여기에서도 누구도 함부로 방출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고, 폐기 및 재활용과정에서도 CFC, HCFC, HFC의 회수, 파괴(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도 마구 방출해서는 안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효과적인 냉매 관리를 위하여 냉매관리 대상 제품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아니라 냉매의 생산(수입 포함), 유통, 사용, 회수, 분리(정제) 및 재활용, 파괴 등 전반적인 과정과 냉매 취급자들에 대한 관리 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법령의 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